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
----------	----

제출년월일 : 1991. 7. 16.
제출자 : 안산시장

1. 제안이유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설치근거인 도시계획법제65조 및 도로법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제3조의 제1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해 삭제(법률 제4175호 '89.12.30)됨에 따라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 o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사본 1부
-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제3조제6항 : 도로법제66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 호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산시도로수의자부담금징수조례

[안산시조례 제50호]
198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의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신설이라 함은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공사와 하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도로로 된 경우를 말한다. 단,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도로의 개축"이라 함은 도로의 확장공사와 포장공사를 말한다.
3.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당시 토지의 시가가 공사시행 공고당시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1.5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4. "토지의 자연상승"이라 함은 공사시행공고일로부터 부과시 토지가액 조사완료기 간까지 특수한 여건없이 상승한 유사지의 시가상승치를 말한다.
5. "공사비"라 함은 도로에 관한 본 공사비와 부대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자) 부담금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공고당시의 토지소유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부과시 토지소유자에게 승계한다.

제4조(부과총액의 결정) 부과총액은 동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부과구역의 한계) ①도로신설의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도로폭원의 3배의 구역과 당해도로의 시중점에 있어서는 도로폭원의 5배의 구역
2. 신설된 도로폭원이 20미터 미만일 때에는 20미터로 본다.
3. 기존도로에 접한 하천을 복개한 때에는 복개된 측은 제1호에 의하고 기존도로측은 도로에 접한 토지만을 그 한계로 한다.
- ②복개도로의 평균 폭원보다 2배이상일 때에는 이를 도로의 신설로 보고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 ③도로확장구역의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확장된 도로폭원의 3배

의 구역

2. 확장된 도로폭원이 10미터 미만인 때에는 10미터로 본다.
3. 확장된 도로폭원이 종전의 도로의 폭원이 2배이상인 때에는 전 폭원의 3배 구역
4. 도로의 축면만을 확장한 때에는 확장된 축은 제1호에 의하여 기존 도로축은 도로에 접한 토지만을 그 한계로 한다.

④도로포장구역의 한계는 도로양측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포장도로 폭원이 10미터 미만일 때에는 20미터 구역으로 한다.

제6조(동전) 부과구역내의 토지이용을 구분하여야 할 하천 구거, 산악, 계방, 칠도, 궤도 또는 오지등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부과구역의 한계로 한다.

제7조(동전) 신설 또는 확장도로와 병행하여 동등이상의 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가 그 부과구역의 2배의 지역내에 있을 때에는 각 도로의 폭원 비례에 의하여 부과구역의 한계로 한다.

제8조(가액조사) 도로의 신설 개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장은 사전에 부과구역 및 유사지에 관한 토지가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급조사를 할 수 있다.

②토지의 가액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필지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4구역으로 구분하여 가액조사를 행하고 각 구역의 평균치로서 그 구역의 토지 가액으로 한다.

1. 도로표지면에 접한 토지
2. 도로양측 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부과구역 3분의 1까지 구역으로서 전호의 토지를 제외한 구역
3. 전호의 경계선에서 부과구역 한계의 2분의 1까지의 구역

4. 전 각호를 제외한 구역

③유사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공사이외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부과대상 토지와 동일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공고) 시장은 전조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조사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2. 공사의 시행지
3. 공사의 시행청
4. 공사의 착공년월일
5. 공사의 준공년월일
6. 공사비
7. 부담금 한도액
8. 부과구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부과의 시기등) ①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토지가액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사 및 부과는 공사준공 후 1년내에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을 분할 부과하거나 또는 공사를 수개공구로 나누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부과금의 구역별 부과비율을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11 조(부과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을 감면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2. 도세와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3. 부과 대상자가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하천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 또는 금전을 부담한 때

4. 주민이 공사비를 부담하였을 때

5. 부담금의 부과가 있은 후 타도로의 동종공사로 인하여 부과대상이 된 때(제 8조 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제외한다).

6. 부과대상자가 생활보호법 제 3조에 해당될 때

7. 재해복구 공사인 때

8. 규칙에 별도 정함이 있을 때

제 12 조(공사비의 결정) ①제 9조에 의한 공고당시의 공사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와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정산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공사비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과구역에 빙동이 있을 경우에는 빙동된 구역을 부과구역으로 한다.

제 13 조(납부통지) 부담금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부장소 및 납기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분할납부)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장은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기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안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중인 수익자가 당해 토지를 처분할 때에는 부담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이의신청) ①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납부증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진항의 이의에 대하여 시장은 세입의 확보보다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제 16 조(강제징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7 조(권한위임)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은 등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